

## 결 정

2018 - 1041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
2.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
3.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

## 주 문

**매일경제** 2018년 1월 2일자 B8면 「여행+/겨울 힐링 여행」· B9면 「여행+/지중해 크루즈」, 1월 17일자 B4면 「새해 건강기능식품」 특집 면, **서울경제** 1월 8일자 B5면 「베스트컬렉션」, 1월 15일자 B5면 「베스트컬렉션」, 1월 25일자 28~29면 「신약 R&D가 미래다」 특집면, **한국경제** 1월 8일자 T8 「여행의 향기/해외 골프여행」·T10면 「명품의 향기/이탈리아 명품 스포츠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」, 1월 25일자 B8면 「장 건강」 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



매일경제, 서울경제, 한국경제의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, 여행상품, 크루즈, 금융상품, 제약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.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면도로 소개하고 있다.

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,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김기응

위	원	정	송	호	
		장	명	국	장 명 국
		이	동	현	
		장	인	철	장 인 철
		김	규	식	김 규 식
		강		희	강 희
		하	윤	수	
		김	영	모	김 영 모
		박	현	갑	
		박	미	경	박 미 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